

[제10의 2호 서식]

위임장			
수임인 (대리인)	성명	(생년월일 :)	
	주소	(관계 :)	
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 2 (어음·수표의 공증 등)에 의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행위를 허락하고 그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증서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.			
(약속어음) 액면		금 원정 (₩)	
발행일	20 . . .	발행인	
지급기일		수취인	
발행지	광주광역시	양도인	
지급지	광주광역시	양수인	
지급장소	광주광역시	위임일	20 . . .
위임인	성명 주소 ㉠		
위임인	성명 주소 ㉠		
위임인	성명 주소 ㉠		
위임인	성명 주소 ㉠		

